

군포도시공사 제1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



2025년 3월 17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50 호

## 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② 소속 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(미숙아를 출산하여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,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 출산휴가를 허가한 경우에는 즉시 경영기획실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장 곽 성 우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	담당자 성명 (전 화)	김 재 덕 ( 3 9 0 - 7 6 0 9 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32조(특별휴가)</b></p> <p>② 소속 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<u>90일의 출산휴가</u>를 허가할 수 있다. 출산휴가를 허가한 경우에는 즉시 경영기획실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32조(특별휴가)</b></p> <p>----- ----- -----<u>90일(미숙아를 출산하여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,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</u>----- --.</p>

## 관계법령

## 근로기준법 제74조 1항

**제74조(임산부의 보호)**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(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,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 되어야 하고, 미숙아의 범위,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